

■ 신청 일시 및 장소

구분	일자		접수시간	신청장소
이전기관 종사자	2018.04.11(수)		09:00 ~ 17:30	한국주택협회(www.housing.or.kr) →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
일반(기관추천)			10:00 ~ 14:00	
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	당해지역	2018.04.12(목)	10:00 ~ 16:00	세종 마스터힐스 건분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-1번지 일원
	기타지역	2018.04.13(금)	10:00 ~ 16:00	

■ 특별공급 대상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

구분	대상	가입기간
이전기관 종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7조 및 「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으로 확인하여 '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·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, 세종특별자치시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됨(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) · 재당첨제한 적용(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) 	-
일반(기관추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철거주택 소유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중소기업 근로자,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·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동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건분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[미신청 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 불가]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· 주택형은 특별공급 신청일 당일 기관별 대상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함 	6개월 (철거주택 소유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)
다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. (자녀수에는 입양자녀 및 임신중 태아도 포함됨) ·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(태아 및 입양아 포함)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	6개월
신혼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포함)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(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※ 단,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,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·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 	6개월
노부모부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) 	24개월

※ 특별공급 배정세대수는 별도의 공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신청 시 구비서류

※ 아래 제증명서류는 세종 마스터힐스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04.06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신청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	본인	건분주택 내 양식 비치,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증서류 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주민등록증	본인	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 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
	○		주민등록표 등본	배우자	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제출
	○		주민등록표 초본	본인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
	○		청약통장 가입은행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apt2you 홈페이지에서 발급 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주택소유자 제외)
기관추천 특별공급	○		해당기관추천서		해당 기관에서 선정한 추천명단 대상에 한함
다자녀 특별공급	○		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		건분주택 내 양식 비치
		○	주민등록표 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주민등록표 등본	자녀	미혼, 이혼, 사별,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,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,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시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입양인 경우
		○	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진단서,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건분주택 양식비치
		○	임신진단서 및 출산이행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(국민건강보험공단)
		○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(의료)보험증(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)	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(소득증빙 서류 참조) (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 소득입증서류 포함)
		○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	건분주택 내 양식 비치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	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 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/ 직계비속	
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					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관련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건분주택에 양식 비치
	○		주민등록증	대리인	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	○		인장	대리인	위임장 작성 시 사용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산정 기준표

구분	평점요소		산정기준	모집공고 2018년 4월 06일 기준
다자녀	자녀수	미성년 기준	만 19세 미만 기준	1999년 04월 07일부터 출생
		영유아 기준	만 6세 미만 기준	2012년 04월 07일부터 출생
	세대구성	3세대 이상(과거 3년 이상)		~ 2015년 04월 06일(포함)이전 등본상 주소지 동일
		한부모 가족(5년 경과)		~ 2013년 04월 06일(포함)이전 등록
	무주택 기간	공급신청자 만40세 이상		~ 1978년 04월 06일(포함)이전 출생
		무주택기간 10년 이상		~ 2008년 04월 06일(포함)이전 무주택(배우자 포함)
		공급신청자 만35세 이상		~ 1983년 04월 06일(포함)이전 출생
		무주택기간 5년 이상		~ 2013년 04월 06일(포함)이전 무주택 (배우자 포함)
		무주택기간 5년 미만		2013년 04월 07일부터 무주택(배우자 포함)
	세종시 거주기간	10년 이상		~ 2008년 04월 06일(포함)이전 거주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	2008년 04월 07일 ~ 2013년 04월 06일
		1년 이상 ~ 5년 미만		2013년 04월 07일 ~ 2017년 04월 06일
		1년 미만		2017년 04월 07일부터 거주

■ 신혼부부 혼인기간 산정 기준표

구분	산정기준(혼인신고일 기준)	모집공고 2018년 04월 06일 기준
1순위	혼인기간 3년 이내	2015년 04월 06일(포함)이후 혼인신고
2순위	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	2013년 04월 06일 ~ 2015년 04월 05일 혼인신고

※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 발생 시 자녀의 수가 많은 자가 우선하며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함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-전년도(2017년)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

구분	3인 가구 이하	4인 가구	5인 가구 이상
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	5,002,590원 이하	5,846,903원 이하	5,846,903원 이하
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(120%)	6,003,108원 이하	7,016,284원 이하	7,016,284원 이하

※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(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존·비속/배우자 세대 분리시에도 동일 적용)으로 함

※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%를 넘지 않아야 함

※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액(21번)또는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으로 하며 근무개월수를 나누어 월 소득 산출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산정 기준표

구분	산정기준	모집공고 2018년 04월 06일 기준
만 65세 이상	만 65세 이상 기준	~ 1953년 04월 06일(포함)이전
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	3년 이상 부양	~ 2015년 04월 06일(포함)이전

■ 가산일 계산 기준표

※ 만 나이 계산 시 : 04월 07일 이후 출생자는 (2018년-출생년도-1) / 04월 06일[포함] 이전 출생자는 [2018년-출생년도]

구분		날짜	비고
통장가입시점		2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무주택기간/ 통장가입기간	※무주택기간 기준 ① 만 30세 부터 ② 만 30세 이전 혼인할 경우 → 혼인신고일부터	6개월 미만	[포함] 이후 가입
		1년 미만	[포함] 이후 가입
		1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2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3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4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5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6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7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8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9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10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11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12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		13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
14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		
15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		
부양가족	미혼직계비속	만 30세 이상	[포함] 이전 출생
		1년 이상	[포함] 이전 전입
	직계존속	만 60세 이상	[포함] 이전 출생
		3년 이상	[포함] 이전 전입
자녀 연령 [신혼 / 다자녀]	미성년자녀	만 19세 미만	[포함] 이후 출생
	영유아자녀	만 6세 미만	[포함] 이후 출생
신혼특공	혼인관계	혼인 3년 이내	[포함] 이후 혼인
		혼인 5년 이내	[포함] 이후 혼인
다자녀	공급신청자	만 40세 이상	[포함] 이전 출생
		만 35세 이상	[포함] 이전 출생
	주민등록 초본	1년 미만	[포함] 이후 전입
		5년 미만	[포함] 이후 전입
		10년 미만	[포함] 이후 전입
		10년 이상	[포함] 이전 전입
입주자 저축	10년 이상	[포함] 이전 가입	
노부모	직계존속	만 65세 이상	[포함] 이전 출생